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12. 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11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11.18.

다. 상정일자: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12.6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지역경제과장 김도원】

가. 제안이유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을 따르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개정함.

나. 주요내용

1)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조문 신설

-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(안 제10조), 상인회의 등록 취소(안 제21조 제4항)
-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등의 근거 마련(안 제26조의2)

2)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조문 신설
(안 제27조의2)
-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를 1회로 정함
-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 5년
-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대상자 조건

3)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조문 신설(안 제27조의3)

4) 과태료의 법률적 근거 명확화(안 제35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최국모)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근거법인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일부 조항이 2019년 1월 8일 개정되고 2019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전통시장 인정 취소 시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르게 하는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명확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음.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0조(시장의 인정취소 등) 조항을 신설하여 법 제10조의2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장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「행정절차법」의 청문절차에 따르도록 하였고,

- 안 제21조(상인회 등록 등) 제4항을 신설하여 상인회 등록취소 처분 시 행정절차법의 청문규정을 적용하였고,

- 안 제26조의2, 제27조의2를 각각 신설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처분 시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의 청문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이익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,

-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하고,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 시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음.

- 이는 공유재산의 장기간 독점 사용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으로 판단됨.

- 안 제27조의3을 추가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(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) 동의를 철회하려고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, 주소, 철회 사유 등을 기재한 후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는바, 이는 시장 정비사업의 혼선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됨.

- 또한, 조례 제35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대하여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야 함에도 다른 규칙을 준용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.

○ 위와 같이 개정 조항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문절차의 규정,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시 요건을 강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등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론요지: 없 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8. 기 타: 없 음

【참고자료 - 관계법령】

《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》

제10조의2(시장의 인정 취소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을 인정받은 경우
2.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3. 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7조의2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·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、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、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、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사용、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、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사용、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、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、수익허가를 받은 자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、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、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제5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용、수익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38조의2(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)

① 토지등 소유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를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이 해당 사업추진계획을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② 토지등 소유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을 통하여 해당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

항은 시、군、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5조(상인회)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.

② 법인인 상인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③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、군수、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④ ~ ⑦ (생 략)

⑧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
2.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
3.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
4.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, 건축물、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⑨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、군、구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8조(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) ① 시장、군수、구청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2. 상인 및 건축물·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3. 시장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
4. 시장관리자가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《질서위반행위규제법》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